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53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황 희·한병도·한민수

어기구 • 안규백 • 정성호

박균택 • 이용선 • 이훈기

김태년 • 이정헌 • 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멸실된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철거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 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멸실되지 아 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등으로 철거·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과세표준과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주택"을 "주택(리모델링중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 다.

이 경우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 리모델 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장에서 "리모델링중주택"이라 한다)은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 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 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6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 리 모델링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		
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	
	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장에서 "리모델	
	링중주택"이라 한다)은 철거・	
	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	
	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	2	
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		
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	다	
는 <u>주택</u> 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리모델링중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	을 포함한다)	

토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